

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위원회 지침

시행일 : 2019. 03. 01.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실무교육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

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(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), 부대학원장 및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법조실무경력 전임교원(이하 실무교원이라 한다)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된다.

제3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
1. 법조실무과목의 편성
2. 법조실무과목 담당 교원의 배정
3. 법조실무과목 교재 및 강의기법의 연구·개발
4. 교육용 사건기록의 작성 및 연구업적의 인정
5. 기타 실무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 (회의)

-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 (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소위원회)

- ① 교육용 사건기록의 연구업적산정·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위원회 안에 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소위원회(이하 소위원회라 한다)를 설치한다.
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(부대학원장)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용 사건기록 심사 지침에서 정한다.

제6조 (다른 위원회와의 관계)

- ① 위원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실무교육의 학사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변호사시험지도, 진로 및 취업지도, 실습과정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변호사시험지도 위원회, 진로 및 취업지도 위원회, 실습지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- ③ 대학원장은 안전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